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3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 한국형TDF 2050 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1.24
- 3. 정정사유
-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위험등급 분류기준 개편안(97.5% VaR) 반영 , 재무정보 확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_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 력	_	업데이트	
10.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 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 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 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 므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 97.5% VaR')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97.5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VaR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 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2.41% 입니다.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 출한 97.5% VaR는 25.39% 입니다.	
13.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 항	_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_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